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7. 5. 22.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5월11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2007.5.18)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배 상필)

가. 제안이유

- 동(洞)기능 전환이후 행정의 간소화 및 공동주택의 확대 등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장의 역할과 임무가 축소되어 관리범위의 확대가 필요하여 통·반장의 관할구역 범위를 조정하고, 통장 및 반장의 해촉권자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개 통의 범위를 “6개반 내지 8개반”에서 “8개 반부터 12개 반 까지”로 하고,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에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하여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로 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한다”로 개정 (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
- 통·반장 해촉권자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 (안 제5조 제4항)
- 행정구역 재편 및 통·반조정에 따른 통·폐합이 있는 경우 위촉권자가 해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5조 제4항 제6호)

-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표기 (안 제7조제1항)
- 통·반장의 잡부금 면제 및 통장의 공과금 일부 면제 규정 삭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김완섭)

안 1)

-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조정으로 통·폐합되어 해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통·폐합일 전일까지로 하고, 다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 부칙 제2항(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임기만료 시까지 제5조 제4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그러나 재임 중인 통장을 해촉할 수 있어 기득권자 보호의 문제가 있으나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보호하고,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통장은 통·폐합 시 다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를 남은 기간으로 하여 기득권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으나 필요시 통·폐합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3] 개정조문에 따른 비교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 (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되어 해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통·폐합일 전일까지 하고, 다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③ (생략) ④ 1. ~ 5. (생략) 6. (신설) 6. (생략)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 ~ 5. (현행과 같음) 6.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 7. (현행 제6항과 같음)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1. ~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②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임기만료 시까지 제5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2)

- 안 제5조 제4항 제6호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2항(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로 하여 현재 재임 중인 통장의 임기는 보장하도록

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위적으로 인원을 줄이기보다는 행정구역개편, 재건축, 재개발, 통장 임기만료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연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나 필요 시 통·폐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4] 개정조문에 따른 비교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③ (생략) ④ 1. ~ 5. (생략) 6. (신설) 6. (생략)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 ~ 5. (현행과 같음) 6.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1. ~ 5. (개정안과 같음) (삭제) 6. (현행 제6호와 같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②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

○ 다만, 자구정리 등 수정의견은 안 제2조 제2항 중 조례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1통”을 “통”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 중 “각 호”를 “각 호”로 띄어 쓰고, 제5조 제2항 제1호 중 “60세이하”를 “60세 이하”로 띄어 쓰고, 제5조 제4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정비하고, “부 칙”은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도록 되어 “부칙”으로 붙여 쓰는 수정의견임.

4. 審査結果：原案 可決

※ (자구정정내용 첨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구정정 내역

구분	자구정정 전	자구정정 후
제5조제2항	<u>각호</u>	<u>각 호</u>
제5조제2항 제1호	<u>60세이하</u>	<u>60세 이하</u>
제5조제4항 제7호	<u>기타</u>	<u>그 밖에</u>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
----------	----

제출년월일 : 2007. 5.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동(洞)기능 전환이후 행정의 간소화 및 공동주택의 확대 등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장의 역할과 임무가 축소되어 관리범위의 확대가 필요하여 통·반장의 관할구역 범위를 조정하고, 통장 및 반장의 해촉권자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 1개 통의 범위를 “6개반 내지 8개반”에서 “8개 반부터 12개 반까지”로 하고,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에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하여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로 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한다”로 개정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 통·반장 해촉권자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 행정구역 재편 및 통·반 조정에 따른 통·폐합이 있는 경우 위촉권자가 해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5조제4항제6호)
-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표기 (안 제7조제1항)
- 통·반장의 잡부금 면제 및 통장의 공과금 일부 면제 규정 삭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필요없음
- 입법예고(2007. 4.19. ~ 5. 9.) 결과 : 의견반영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6개반 내지 8개반으로”를 “8개 반부터 12개 반까지로”하
고, 동조제3항 중 “20가구 내지 40가구”를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 구
성 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관할구역내에”를 “관
할 구역에”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 중 “야
기하여”를 “일으켜”로 하고, 동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통장을, 동장은 반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6.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

제7조제1항제5호 중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반내에”를 “반에”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구분 개최한다”를 “구분하여 개최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장에게 수당과 상여금을, 반장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와 조 제목은 각각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각각 띄어 쓴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 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법</u> 」 ----- ----- ----- ----- -----.
제2조 (통·반의 조직) ① (생략) ② 1통은 <u>6개반 내지 8개반으로</u> 구성한다. ③ 반은 <u>20가구 내지 40가구로</u>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2조(통·반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u>8개 반부터 12개 반까지로</u> -----. ③ -- <u>20가구부터 40가구까지로</u> 구성하되, <u>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u> ----- . -----, ----- -----.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생략) ② (생략) 1. <u>당해</u> 통의 <u>관할구역내에</u> 거주하는 60세 이하의 주민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 ③ 반장은 <u>당해</u> 반의 <u>관할구역내에</u>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u>야기하여</u>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u>해당</u> ----- <u>관할구역에</u> ----- ----- ----- ----- ③ ----- <u>해당</u> ----- <u>관할구역에</u> ----- ----- . ④ 구청장은 통장을, 동장은 반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u>일으켜</u>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5. (생략) <u><신설></u> 6.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5. (현행과 같음) 6.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 7.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임무) ① (생략) 1. ~ 4. (생략) 5. <u>주민복지센터</u> 및 새마을사업추진협조지원 6. ~ 9. (생략) ②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u>대행한다</u>.	제7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u>주민자치센터</u> ----- ----- 6. ~ 9. (현행과 같음) ② ----- ----- <u>대행할 수 있다</u>.
제8조 (반상회) ①반상회는 <u>반내에</u>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u>구분 개최한다</u>. ③ (생략)	제8조(반상회) ① ----- <u>반에</u> ----- -----. ② ----- <u>구분하여</u> <u>개최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편의제공) 통·반장은 <u>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u>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 <u>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u> ----- -----.
제11조 (실비수당 등) ①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u>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u>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장에게 수당과 상여금을, 반장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u>